

2026년 시험대비 손해사정사 2차 배상책임 (임경아) 기본서 정오표 _ 26.01.07

페이지	원본	수정사항
<p>123~124p (비용 손해 부지급으로 답안 수정)</p>	<p>* P123 박스 내용 (위에서 8번째 줄) ⇒ 다만, 손해방지 비용에 관하여 보험자는 보상한다. * P123 박스 내용 (밑에서 14번째 줄) ⇒ 2. 2차 사고 2) 비용손해 응급처치 및 호송비용:100만원 보상(손해방지비용) 3) 보상금액: 100만원 * P124 박스 내용 ⇒ 2) 2차사고: 100만원 5) 총 보상금액 31,000만원 < 총보상한도 5억 ▶ 31,000만원</p>	<p>* P123 박스 내용 (위에서 8번째 줄) ⇒ 그리고 해당 사고는 보험자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방지 비용에 관하여도 보상하지 않는다. * P123 박스 내용 (밑에서 14번째 줄) ⇒ 2. 2차 사고 2) 비용손해 응급처치 및 호송비용: 면책 3) 보상금액: 0 * P124 박스 내용 ⇒ 2) 2차사고: 면책 5) 총 보상금액 30,900만원 < 총보상한도 5억 ▶ 30,900만원</p>
<p>191p (일부 내용 삭제)</p>	<p>* P191 하단 4.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~ ⑨ 삭제 ① 계약자 ~ ② 화재가 발생했을 때 ~ ③ 보험의 목적의 발효, ~ ④ 화재로 생긴 것이든 ~ ⑤ 발전기 ~ ⑥ 원인의 직접, ~ ⑦ 핵연료물질 또는 ~ ⑧ 위 제7호 이외의 ~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~ ⑩ 피해자의 고의나 ~ ⑪ 전쟁, 폭동 및 ~ ⑫ 지진 또는 ~</p>	<p>* P191 하단 4.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(① ~ ⑨ 삭제) ⑩ 피해자의 고의나 ~ ⑪ 전쟁, 폭동 및 ~ ⑫ 지진 또는 ~ ⑬ 핵연료물질 또는 ~ ⑭ 위 ⑬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~</p>

	<p>⑬ 핵연료물질 또는 ~ ⑭ 위 ⑬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~</p>	
<p>263p (장제비를 장례비로 수정)</p>	<p>* 박스 내용 제100조 (장제비) 제101조 (행방불명보상) ② ~ 유족보상 및 장제비를 적용한다.</p>	<p>* 박스 내용 제100조 (장례비) 제101조 (행방불명보상) ② ~ 유족보상 및 장례비를 적용한다.</p>
<p>274~275p (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고정성 삭제)</p>	<p>* P274 본문 내용 (위에서 8번째 줄) (1) 통상임금 1) 의의 근로자에게 정기적, 일률적(교정적)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~ 2) 요건 ③ 고정성 :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,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의 것 * P275 박스 (중간 부분 통상임금 여부) (최소한도만큼 일률적·교정적 지급인 경우)</p>	<p>* P274 본문 내용 (위에서 8번째 줄) (1) 통상임금 1) 의의 근로자에게 정기적,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~ 2) 요건 ③ 고정성 삭제 * P275 박스 (중간 부분 통상임금 여부) (최소한도만큼 일률적 지급인 경우)</p>
<p>282p (장제비를 장례비로 수정)</p>	<p>* P 282 (중간부분) ② 선원법 적용 근로자 선원법상 요양보상, 상병보상, 장애보상, 일시보상, 유족보상, 장제비, 행방불명</p>	<p>* P 282 (중간부분) ② 선원법 적용 근로자 선원법상 요양보상, 상병보상, 장애보상, 일시보상, 유족보상, 장례비, 행방불명</p>
<p>294~298p (장제비를 장례비로 수정)</p>	<p>* P294 (4) 일시보상 ~ 면할 수 있다(유족보상과 장제비에 관한 책임면제에 관한 규정은 없다). ~ * P295(상위 박스, 중간내용, 하위 박스) [유족의 순위] ① 유족보상(장제비를 포함)을 ~</p>	<p>* P294 (4) 일시보상 ~ 면할 수 있다(유족보상과 장례비에 관한 책임면제에 관한 규정은 없다). ~ * P295(상위 박스, 중간내용, 하위 박스) [유족의 순위] ① 유족보상(장례비를 포함)을 ~</p>

	<p>6) 장제비 :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[행방불명보상] ~ 1개월을 경과하였을 때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유족보상과 장제비를 추가로 지급한다. * P296</p> <p>② 장제비 선원이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(중간 부분) * P298 (박스 중간, 하단)</p> <p>장례비(장제비) 행방불명보상: ~ 보상과 장제비를 지급한다</p>	<p>6) 장례비 :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[행방불명보상] ~ 1개월을 경과하였을 때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유족보상과 장례비를 추가로 지급한다. * P296</p> <p>② 장례비 선원이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(중간 부분) * P298 (박스 중간, 하단)</p> <p>장례비 행방불명보상: ~ 보상과 장례비를 지급한다</p>
--	--	---